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인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388

발의연월일: 2021. 9. 2.

발 의 자:권인숙·강득구·서동용

안호영 • 유동수 • 유정주

이성만 • 이수진(비) • 장경태

정춘숙 · 조승래 · 홍정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원의 판결·명령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·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는 지역사회에 성범죄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바탕으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. 특히 신상정보고지제는 아동·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등에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보다 강화된 보호의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음. 여성가족부는 기존 우편으로 고지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모바일 방식의 전자고지를 도입하였음. 또한 현행법은 고지된 신상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공개정보는 아동·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악용을 금지하고 있음.

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'아동·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'로 변경하여 고지 대상이 보다 명확히 특정될 수 있도록 하며, 모바일 방식으로 집행되는 신상정보 전자고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 또한 신상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악용금지의 대상을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제50조제5항 중 "아동·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" 를 "아동·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"로, "동 주민자치센터의 장"을 "동 주민센터의 장"으로 한다.

제51조제4항 중 "아동·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"를 "아동·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"로, "동 주민자치센터의 장"을 "동 주민센터의 장"으로, "주민자치센터 게시판"을 "주민센터 게시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아동·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"를 "아동·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"로, "송부하여야 한다"를 "송부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동 주민자치센터의 장"을 "동 주민센터의 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동 주민자치센터의 장"을 "동 주민센터의 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"제4항"을 "제4항 및 제5항"으로 한다.

제51조의2의 제목 "(고지정보의 정정 등)"을 "(공개정보 및 고지정보의 정정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제51조"를 "제51조 및 제52조"로, "고지정보"를 "공개정보 및 고지정보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고지정보의 정정요청"을 "정보의 정정요청"으로, "고지정보의 진위"를 "정보의 진위"로, "고지대상자"를 "공개대상자 및 고지대상자"로 하고, 같은 조

제3항 중 "고지정보에 오류"를 "정보에 오류"로, "제51조제4항"을 "제51조제4항 및 제52조제1항"으로, "고지정보에 정정"을 "정보에 정정"으로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"고지정보"를 각각 "정보"로 한다. 제55조의 제목 "(공개정보의 악용금지)"를 "(공개정보 및 고지정보의 악용금지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공개정보"를 "공개정보 및 고지정보의 악용금지)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개정보를 확인"을 "공개정보 및 고지정보를 확인"으로, "공개정보를 활용하여"를 "공개정보 및 고지정보를 활용하여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공개정보"를 "정보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개정보를 확인"을 "공개정보 및 고지정보를 확원"으로, "공개정보를 등록대상"을 "공개정보 및 고지정보를 확인"으로, "공개정보를 등록대상"을 "공개정보 및 고지정보를 등록대상"으로, "공개정보를 등록대상"을 "공개정보 및 고지정보를 등록대상"으로, "공개대상자"를 "공개대상자 및 고지대상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등록정보의 고지) ① ~	제50조(등록정보의 고지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	⑤
상자가 거주하는 읍・면・동의	
<u>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</u>	<u>아동ㆍ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</u>
<u>정대리인이 있는 가구</u> , 「영유	<u> 대주</u>
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	
원장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	
유치원의 장, 「초・중등교육	
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,	
읍·면사무소와 <u>동 주민자치센</u>	<u>동</u> 주민센
<u>터의 장</u> (경계를 같이 하는 읍·	터의 장
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), 「학원	
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	
관한 법률」 제2조의2에 따른	
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「아	
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8호	
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「청	
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제1	
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	
에게 고지한다.	
제51조(고지명령의 집행) ① ~	제51조(고지명령의 집행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	4

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 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「유아교육 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, 읍 · 면사무소 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, 「학 원의 설립 ·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|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「아 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「청 소년활동 진흥법 _ 제10조제1 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, 읍・ 면 사무소 또는 동(경계를 같이 하는 읍 • 면 또는 동을 포함한 다)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 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 령을 집행한다.

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 할구역에 출생신고·입양신고 ·전입신고가 된 아동·청소년

<u>아동·청소년이</u> <u>있는 세대의 세대주</u>
<u>동 주민센터의 장</u>
<u>주민센터 게시판</u>
,
5
<u>아동</u>

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및 관할구역에 설립 ·설치된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유아 교육법 | 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장, 「학원의 설 립・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|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 과교습학원의 장과 「아동복지 법」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서 고 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으 로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 를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

⑥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및 제5항에 따른 우편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·면사무소의 장 또는 <u>동 주민자치센터의 장</u>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· 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
- <u>송부한다</u> .
6
드 즈리 케리시 키
<u>동 주민센터의 장</u>

- ①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·면사무소의 장 또는 <u>동</u>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우편송부 및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한다.
-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<u>제4항</u>에 따른 고지 외에도 그 밖의 방법 에 의하여 고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.
- ⑨ (생략)

제51조의2(고지정보의 정정 등) 🗷

- ① 누구든지 <u>제51조</u>에 따라 집 행된 <u>고지정보</u>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 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, 법무부장관은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

·····동 주
<u> 민센터의 장</u>
⑧ <u>제4항 및</u>
제5항
.
⑨ (현행과 같음)
제51조의2(공개정보 및 고지정보
<u>의 정정 등)</u> ①
<u>제51조 및 제52조</u>
공개정보 및 고지정보
②
<u>정보의 정정요청</u>
정보의 진위
<u>공개대상자 및</u>
<u>고지대상자</u>
3

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정보를 등록한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집행된 고지정보에 정정 사항이었음을 알려야 한다.

-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에 게 알려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<u>고지정보</u> 정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, 조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, 확 인 요구 방법 및 절차,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- 제55조(공개정보의 악용금지) ① 저 공개정보는 아동·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

<u>정보에 오류</u>
제51조제4항 및 제52조제1항
<u>정보에 정정</u>
4
정보
⑤ <u>정보</u>
<u> </u>
 세55조(공개정보 및 고지정보의
악용금지) ① 공개정보 및 고지
<u>정보</u>
··

-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활용하여 -----1. (생략)
- 2.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 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 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
- 1. ~ 3. (생략)

니 된다.

-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 ②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를 확 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 인---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를
 - 1. (현행과 같음)
 - 2. 정보-----
 - ③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를 확 개정보 및 고지정보를 등록대상 공개대상자 및 고지대상자----
 - 1. ~ 3. (현행과 같음)